

#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

제출년월일 : 2011. 2. 11.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 '09. 5. 22)
-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으로 전부 개정하여 안산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 및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시(안 제1조, 제2조, 안 제3조).
- 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화위원회 구성·기능(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정보화책임관의 지위와 역할 및 행정,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안 제8조, 제9조).
- 라. 민간기관 및 외국 등과의 대외 협력(안 제10조).
- 마. 전자적인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의 제공(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 및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안 제15조, 제16조).
- 사.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안 제17조).
- 아. 정보접근성 보장 및 웹표준 준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안 제18조, 제19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전자정부법 제29조, 제3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에고결과 : 별첨**

- 입법예고 : 2010. 11.10. ~ 11.30.(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표준조례안

#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안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안산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부서의 국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국장이 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산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안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정보통신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정보통신과장 이 종 길
	담당·팀장 직위·성명	정보기획담당 장 경 열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문 만 수 (행정 3281)